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친권의 일부 제한 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결정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78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친권의 일부 제한 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결정	3
2. 관계기관 의견	11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31.

(3) 회 부 일 : 2025. 4.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

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친권의 일부 제한 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결정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양육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92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	개정안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에 한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한다.</u> <u>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u>
제925조의2·제925조의3·제926조·제927조의2·제932조·제946조 중 “제924조의2”를 “제924조의2제1항”으로 조문 정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에 관한 권한에 한정된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에 따라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에게도 적용한다.

나. 현행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및 효과

현행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¹⁾는 가정법원이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청구권자(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친권의 일부 제한의 효과를 살펴보면,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친권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친권 제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친권자의 지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제한된 사항에 대하여 친권자가 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법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므로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하고²⁾, 친권 행사에 제한이 있더라도 친권자로서의 나머지 의무는 이행하여야 함³⁾.

1)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2) 「민법」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3) 민유숙, 『주석 민법(친족2)』,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7.491~492면.

한편, 친권의 일부제한 선고가 있는 경우 선고 당시 친권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그 제한된 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친권이 제한된 범위에서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공동친권자인 부모 쌍방이 모두 동일한 범위에서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단독친권자(예를 들어, 부의 사망으로 모가 단독친권자인 경우 등)가 친권의 일부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⁴⁾ 등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친권을 행사하게 됨(「민법」 제928조, 제932조제2항)⁵⁾.

- 4)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으로 부모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된 경우로서 그 단독친권자가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를 받게 되면 먼저 나머지 일방에 대해 친권자 지정이 먼저 청구될 수 있고, 해당 청구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절차를 따름.

「민법」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다. 검토의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한 경우 양육권이 제한된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고⁶⁾, 미성년후견인이 양육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부담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6) 「민법」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는 경우 현행 법상 미성년후견인의 장래 양육비 확보 방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을 입법의 공백으로 판단하고⁷⁾, 제837조⁸⁾에 따른 이혼 시의 양육책임을 유추적용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3)에 따른 양육비심판(마류 가사비송사건)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양육비)]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은 ‘민법 제837조(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을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며(제2항), ‘가정법원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친권의 상실(제924조), 법률행위 대리

7) 미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후견인을 양육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상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8)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9)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사건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되면서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제924조의 2)을 신설하였고,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 등으로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제932조 제2항, 제928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946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모의 친권 중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하 ‘양육권’이라고 한다)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본 규정 내용과 체계, 민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정법원이 양육권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미성년후견인과 비양육친 간의 양육비청구에 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924조의2제2항·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에 한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928조¹⁰⁾에 따라 선임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 또한 비양육친인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924조의2제2항·제3항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 및 변경 청구권자에 미성년후견인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인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類) 사건의 하나로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 사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479호)¹¹⁾이 함께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10)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1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479호,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대한 논의시 함께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현행법상으로는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되는 일부 제한이 선포되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미성년 자녀를 위해 양육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이 직접 비양육친인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비용 부담 결정 및 변경 청구권자로서 후견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가사비송사건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마류(類) 사건	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7) -----제924조의2제1항----- ----- -----
<신 설>	7)의2 「민법」 제9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058